

감사의견구매의 존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신찬휴

안동대학교 경영회계학부 조교수

The Empirical Study on the Existence of the Opinion Shopping

Chan-Hyu Shi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nd Account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외부감사시장에서 감사의견구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감사의견구매의 존재에 대한 실증적 증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순위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의 감사의견 표명기준점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후, 차이분석을 수행하여 측정된 감사의견 표명기준점이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 간의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의 기준점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시장에서 감사의견구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외부감사시장에서 감사의견구매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주제어 : 감사의견구매, 감사의견 표명기준점, 감사인 교체, 순위형 로짓분석, 순위형 프로빗분석

Abstract Although concerns about the opinion shopping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audit market,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empirical evidence on the existence of audit opinions. For this reason,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whether the opinion shopping exists. At first, we measured thresholds of audit opinion issuing of two groups(changed or not-changed auditors). After that, the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 thresholds of the audit opinion issuing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hresholds of audit opinion issuing between two groups.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udit opinion shopping is not a general phenomenon in the external audit marke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confirmed that audit opinion shopping does not exist in the external audit market.

Key Words : Audit Opinion shopping, Thresholds of issuing audit opinion, Auditor change, Ordered logit, Ordered probi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5A07061519)

*Corresponding Author : Chan-Hyu Shin(chshin@anu.ac.kr)

Received June 15,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August 11,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외부의 독립적인 제3자인 감사인이 감사하는 활동이다. 감사의 대가인 감사보수를 피감사기업이 지불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을 감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피감사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독립적인 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의 신뢰성이 향상되어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다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불리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여 피감사기업에 불리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감사의견구매는 피감사기업이 감사계약을 빌미로 감사의견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며, 피감사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의견을 표명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감사인과 계약한다는 것이다. 감사시장에서 감사의견구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사인의 선택 동기가 감사품질이 아니라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이 되고, 감사업체가 전반적으로 감사를 덜 보수적으로 수행하여 정확한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감사의견구매가 지속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지불하는 구조로 인해 감사시장에서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한다는 의심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했으나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한다는 실증적 증거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증거가 더 많이 제시되었다.

감사의견구매는 감사인을 교체하여 덜 보수적인 감사의견을 표명받기를 원하는 전략이므로, 감사인을 최초로 선정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초도감사 시점에 덜 보수적인 감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감사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감사인이 교체되고 최초의 감사인 초도감사 시기에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내부 정보를 최초로 확보하는 시기이므로, 감사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으며 감사인을 교체한 시점에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이론적 관점에서는 감사인 교체를 통한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여부와 감사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 정도를

결정한다. 감사인은 감사의견, 계속기업불확실성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등을 표명하는데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은 회계기준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것이므로 감사인의 보수성이 개입될 관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계속기업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은 피감사기업이 최소 1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판단 대상이 재무제표와 같은 과거 정보가 아니라 미래의 영업활동 지속이라는 미래 정보이므로 감사인의 보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여부와 감사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을 3가지 수준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에 각각 적용하여 6가지의 순위집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6가지 순위집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순위형 로짓분석과 순위형 프로빗분석을 사용하여 각 순위집단 간의 임계점(cut point)를 추정하였고, 연속되는 두 임계점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차이분석을 통해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 간의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연구표본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15,344개의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순위형 로짓분석과 순위형 프로빗분석 모두에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과 교체하지 않은 기업 간의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의 기준점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사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추정된 임계점이 감사인 교체기업과 교체하지 않은 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감사인 교체에 따라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이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연구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감사인 교체는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피감사기업과 감사인이 감사의견구매를 수행할 수는 있어도 감사의견구매가 감사시장 전체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Francis and Krishnan(1999)은 감사인 보수주의(auditor conservatism)를 비적정의견 표명을 위한 임계치(cut-point)를 낮춰 비적정의견을 표명할 확률을 높

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적 감사라는 용어도 결국은 감사의견을 표명할 기준을 강화하여 비적정의견을 표명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감사인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감사인 보수주의 수준이 강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Krishnan(1994)은 감사인 교체 이후에 비적정의견 표명기준이 상향되어 감사인 보수주의가 완화되며, 감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감사인 교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2]. 이러한 결과는 전임 감사인의 보수성에 불만을 가진 피감사기업이 시장 평균적인 감사인 보수주의 수준을 보유한 감사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감사기업이 부적정의견을 표명받은 후에 감사인을 교체하는지에 대해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 Chow and Rice(1982)는 피감사기업은 한정의견을 받은 이후에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정의견을 받은 피감사기업이 한정의견 표명확률이 낮은 감사인으로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였다[3].

Smith(1986)은 한정의견을 받고 감사인을 교체한 139개 표본의 전임 감사인과 현재 감사인 간의 감사의견을 비교한 결과, 오직 5개의 표본에서만 감사의견 변동이 있었다고 보고했다[4].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감사인 교체 성향은 검증하였으나, 감사인 교체 이후에 감사의견구매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rishnan and Krishnan(1996)은 감사인이 진실한 감사의견을 보고할 의도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지속하려는 의도가 존재하며, 진실한 감사의견으로 인해 감사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5]. 감사의견구매는 이러한 상충관계 하에서 고려되며 피감사기업이 계약 지속을 빌미로 피감사기업에 유리한 감사의견을 표명 받으려는 전략이다. 감사인 교체 전후의 감사품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신용인 등(2007)은 감사 첫 해인 초도감사의 감사품질이 낮은지, 초도감사의 감사보수가 낮은 경우 감사품질이 더 낮은지를 검증하였다[6]. 연구 결과, 초도 감사기업의 감사품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도 감사 보수할인기업의 감사품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초도감사의 감사품질이 낮으며, 감사보수를 할인한 경우 더 많은 감사품질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의견구매와 관련된 연구이므로 감사인 교체시점의 감사의견 변화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비슷한 연구로서는 초도감사보수 할인현상에 대한 연구가 있다[7-11]. 두 연구가 모두 감사인 교체 시점은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차이가 존재한다. 감사의견구매는 피감사기업이 동일한 감사보수를 지불하며 유리한 감사의견을 구한다는 점에서 감사인 교체 이후의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이며, 초도감사보수할인은 피감사기업이 동일한 감사의견을 표명 받으면서 감사보수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감사인 교체 전후의 감사보수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도감사보수 할인현상에 대해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초도감사보수 할인현상의 존재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제시된 연구가 많다.

본 연구는 감사의견구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감사인 교체를 주제로 한 연구와 다르며, 감사의견구매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가설 설정 및 연구 설계

3.1 가설 설정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감사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피감사기업이 감사보수를 감사인에게 지불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감사인의 독립성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감사기업이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받기 위해서 덜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감사인과 계약을 맺는다는 감사의견구매(opinion shopping)에 대한 의심이 오랜 기간 존재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학계에서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증거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한다는 의심이 있다.

감사의견구매는 피감사기업이 적정의견을 표명받기 위해 덜 보수적인 감사인을 선택하는 활동이므로 감사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감사인은 최초로 계약을 맺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두 가지의 관점에 따라 감사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첫째, 감사인과의 장기적인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감사전략을 덜 보수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피감사기업의 감사의견구매의 관점에서 피감사기업은 덜 보수적인 감사인과 계약을 통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받기를 원하고, 감사인

은 이에 동조하여 덜 보수적인 감사활동을 진행하여 적정의견 표명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정보를 감사계약이전에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더 보수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초도감사인 경우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더 많은 감사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사전 정보가 없으므로 감사정보의 해석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최초의 감사인 초도감사는 더 보수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교체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감사의견을 덜 보수적으로 표명 받을 수도 있고, 더 보수적으로 표명 받을 수 있다.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감사의견을 교체한 기업과 교체하지 않은 기업 간의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3.2 연구 설계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과 교체하지 않은 기업 간의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가능성의 차이를 검증한다. 외부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3가지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의견, 일반적인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가정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치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이 표명된다. 이 중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따라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므로 감사인의 보수성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계속기업 존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피감사기업이 최소한 1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현재 시점에서 단언할 수 없는 피감사기업의 미래의 영업활동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보수성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감사인이 보수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면 계속기업불확실성의 표명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며, 감사인이 덜 보수적이라면 계속기업불확실성의 표명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계속기업불확실성에 대한 표명은 피감사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므로 이항변수

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 간의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가능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순위형 로짓모형과 순위형 프로빗모형을 사용한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불확실성이 표명되더라도 불확실성의 수준에 따라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계속기업불확실성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표명되며 계속기업불확실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수준에 그친다. 계속기업불확실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면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 사유로 기재되며, 더 중대할 경우 의견거절의 사유로 기재된다. 따라서 감사의견과 계속기업불확실성을 결부하여 고려하면 감사인이 판단하는 계속기업불확실성의 중대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감사의견구매 관점에 따라 감사인 미교체기업에 비해 감사인 교체기업의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가능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피감사기업의 감사보고서에 존재하는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여부(DGC)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¹⁾.

- 0: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지 않은 경우
- 1: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 2: 감사인 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 3: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 4: 감사인 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 5: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 6: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계속기업불확실성의 중대성 수준에 따라 부여된 순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순위형 모형을 설정하여 로짓(logit)분석과 프로빗(probit)분석을 수행한다.

$$DGC = \beta_0 + \beta_2 ROA + \beta_3 \leq V + \beta_4 CFO + \beta_5 LIQ + \beta_6 IC + \beta_7 SIZE + \beta_8 BIGA + \beta_9 KOSPI + ID + YD$$

1)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의 순위를 반대로 부여하더라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 DGC: 계속기업불확실성 중대성에 따른 순위
- ROA: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
- $\leq V$: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 CFO: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현금흐름/총자산
- LIQ: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유동자산
- IC: 자본잠식비율, 자본잠식이면 1, 아니면 0
- SIZE: 기업규모비율,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BIG4: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했으면 1, 아니면 0
- KOSPI: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 ID: 산업더미, YD: 연도더미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였다[1-5, 12.-16]. 총자산이익률(ROA), 영업현금흐름비율(CFO)이 높을수록 계속기업 불확실성 표명이 감소할 것이다, 부채비율($\leq V$), 유동부채비율(LIQ), 자본잠식비율(IC)이 증가할수록 계속기업 불확실성 표명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KOSPI)일수록 계속기업 불확실성 표명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대형회계법인(BIG4)은 평판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감사하여 계속기업 불확실성 표명이 증가할 수 있다. 산업 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산업더미(ID)를 추가하였으며,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도더미(YD)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위형 로짓분석과 순위형 프로빗분석을 수행하는데, 분석별 5개의 임계점(cut point)이 계산된다. 각 임계점은 모형상 추정되는 순위집단을 가르는 임계점으로서 임계점이 유의한 값을 가지면 각 순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위형 로짓분석을 수행하면 감사인 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인 2순위와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한 경우인 3순위 간의 2번째 임계점(cut 2)가 계산되고,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한 경우인 3순위와 감사인 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한 경우인 4순위 간의 3번째 임계점(cut 3)가 계산된다. 따라서 cut 2와 cut 3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3순위 집단인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한 경우와 4순위 집단인 감사인 교체기업이 계속기

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한 경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미교체기업과 감사인 교체기업 간에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감사인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의견 표명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감사인이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순위형 로짓분석과 순위형 프로빗분석을 사용하여 계산된 cut 2와 cut 3의 차이분석, cut 4와 cut 5의 차이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감사인 교체에 따라 감사의견 표명 보수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4. 실증분석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연구표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전체 표본의 크기는 15,344개이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15,344)

	mean	std.dev	min	median	max
DGC	0.009	0.096	0	0	1
SWITCH	0.198	0.399	0	0	1
ROA	0.003	0.135	-0.689	0.026	0.283
LEV	0.400	0.213	0.028	0.395	0.950
CFO	0.041	0.096	-0.295	0.041	0.319
LIQ	0.815	0.793	0.030	0.630	5.458
IC	0.048	0.214	0	0	1
SIZE	25.740	1.415	22.952	25.526	30.418
BIG4	0.521	0.500	0	1	1
KOSPI	0.370	0.483	0	0	1

DGC는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는지 여부이며, 계속기업불확실성을 받은 표본은 전체의 0.9%로서 143개이다.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은 143개 표본 중에서 최종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기업은 82개이고 51개는 의견거절을 표명 받았다. 전체 표본 중 19.8%가 당기에 감사인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고 52.1%가 BIG4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으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전체 표본 중 37%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DGC	ROA	LEV	CFO	LIQ	IC	SIZE	BIG4
ROA	-0.171 (0.000)							
LEV	0.122 (0.000)	-0.271 (0.000)						
CFO	-0.078 (0.000)	0.532 (0.000)	-0.133 (0.000)					
LIQ	0.096 (0.000)	-0.224 (0.000)	0.490 (0.000)	-0.087 (0.000)				
IC	0.204 (0.000)	-0.419 (0.000)	0.279 (0.000)	-0.176 (0.000)	0.165 (0.000)			
SIZE	-0.138 (0.000)	0.185 (0.000)	0.115 (0.000)	0.129 (0.000)	0.165 (0.000)	-0.132 (0.000)		
BIG4	-0.077 (0.000)	0.092 (0.000)	0.027 (0.001)	0.109 (0.000)	0.042 (0.000)	-0.058 (0.000)	0.365 (0.000)	
KOSPI	-0.089 (0.000)	0.065 (0.000)	0.083 (0.000)	0.025 (0.002)	0.116 (0.000)	-0.010 (0.240)	0.587 (0.000)	0.246 (0.000)

1) t-values are presented in parentheses

4.2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여부와 다른 설명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총자산이익률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영업현금흐름이 낮을수록, 유동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잠식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형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기업이 아닐수록,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이 아닐수록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을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다변량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증한다.

4.3 다변량분석

첫 번째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분석과 이항프로빗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계속기업불확실성 여부를 표명 받은 표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서 감사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변수이다. 설명변수로는 ROA, LEV, CFO, LIQ, IC, SIZE, BIG4, KOSPI 등을 사용하였다. 로짓분석과 프로빗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Logit model and probit model

	Logit		Probit		
	Coef.	t-value	Coef.	t-value	
cons	-8.069***	-3.45	cons	-3.464***	-3.42
ROA	-3.520***	-7.50	ROA	-1.707***	-7.95
LEV	1.503***	3.11	LEV	0.520**	2.56
CFO	-1.265	-1.55	CFO	-0.584	-1.56
LIQ	0.386***	5.40	LIQ	0.186***	5.63
IC	1.590***	6.11	IC	0.721***	6.67
SIZE	0.073	0.77	SIZE	0.019	0.47
BIG4	-0.770***	-3.52	BIG4	-0.269***	-2.95
KOSPI	-0.577***	-2.07	KOSPI	-0.298**	-2.55
LR chi ²	556.53		LR chi ²	572.29	
Pseudo R ²	0.3431		Pseudo R ²	0.3529	
n	15,344		n	15,344	

1)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a sample got the going concern opinion.

2) ***, **, * are respectively represented the significant level at 1%, 5%, and 10%.

로짓분석과 프로빗분석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추정치가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련 설명변수인 총자산이익률이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유동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잠식일수록,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다르게 영업현금흐름은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들이 대체적으로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인 교체한 기

업에 대해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가능성이 증가하는지를 다항로지트모형과 다항프로빗모형을 통해 검증한다.

Table 4. Ordered logit model and ordered probit model

Ordered Logit			Ordered Probit		
	Coef.	t-value		Coef.	t-value
ROA	0.255	1.36	ROA	-0.014	-0.14
LEV	0.876***	7.70	LEV	0.475***	7.51
CFO	-0.191	-0.80	CFO	-0.062	-0.46
LIQ	0.062**	2.05	LIQ	0.046***	2.82
IC	0.740***	7.99	IC	0.490***	9.18
SIZE	-0.244***	-11.84	SIZE	-0.127***	-11.32
BIG4	-0.134***	-3.11	BIG4	-0.080***	-3.25
KOSPI	-0.128**	-2.40	KOSPI	-0.081***	-2.7
cut1	-4.558		cut1	-2.231	
cut2	-1.191		cut2	-0.595	
cut3	-0.923		cut3	-0.481	
cut4	-0.846		cut4	-0.450	
cut5	0.179		cut5	-0.052	
LR chi2	576.39		LR chi2	657.58	
Pseudo R2	0.0338		Pseudo R2	0.0386	
n	15344		n	15344	

- 1) The dependent variable is OGC. If a sample without switching its auditor did not get the going concern, takes 1 value. If a sample with switching its auditor did not get the going concern, takes 2 value. If a sample without switching its auditor got the going concern with the qualified opinion, takes 3 value. If a sample with switching its auditor got the going concern with the qualified opinion, takes 4 value. If a sample without switching its auditor got the going concern with the disclaimer of opinion, takes 5 value. If a sample with switching its auditor got the going concern with the disclaimer of opinion, takes 6 value.
- 2) ***, **, * are respectively represented the significant level at 1%, 5%, and 10%.

Table 4.에 순위로지트모형과 순위형프로빗모형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순위로지트모형과 순위형프로빗모형의 결과를 이전의 이항로지트모형과 이항프로빗모형의 결과와 비교하면, 총자산이익률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순위형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에 대해 동일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감사인을 교체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표명기준의 임계점(cut point)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감사인 교체여부에 따라 동일한 계속기업불확실성 검토의견에 임계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cut 2와 cut 3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cut 2는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하지 않은 감사인 미교체집단과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한정 의견으로 표명한 감사인 교체집단 간의 임계점이며, cut 3는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한정

의견으로 표명한 감사인 교체집단과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한정 의견으로 표명한 감사인 미교체집단 간의 임계점이다. 따라서 감사인 교체여부가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cut 2와 cut 3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cut 2와 cut 3의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면 감사인 교체여부로 인해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기준의 임계점이 상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ut2와 cut3의 차이분석 결과 χ^2 값이 32.98로서 1% 수준의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계속기업불확실성을 의견거절로 표명한 감사인 교체집단과 계속기업불확실성을 의견거절로 표명한 감사인 미교체집단과의 임계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cut 4와 cut 5의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cut 4와 cut 5의 차이분석 결과 χ^2 값이 60.27 1% 수준의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순위형 프로빗모형의 임계점을 비교했을 때도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순위형 프로빗모형 cut 2와 cut 3의 차이분석 결과 χ^2 값이 33.94로서 1% 수준의 유의한 값을 나타냈으며, cut 4와 cut 5의 차이분석 결과 χ^2 값이 67.04로서 1% 수준의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계속기업불확실성에 대해 동일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감사인 교체여부에 따라 임계점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인 교체 기업에 비해 미교체기업의 임계점이 높은 것을 확인하여 감사인은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 간의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기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구매는 덜 보수적인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감사인을 교체하는 행위이므로,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한다면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기준이 덜 보수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인을 교체한 집단과 감사인을 교체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사의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의견구매가 외부감사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외부감사는 피감사기업이 보고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제3자인 감사인이 감사하는 활동이다. 감사인은 독립된 지위를 갖고 피감사기업을 감사해야 하지만,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지불하므로 감사인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었다. 특히 감사의견구매에 대한 의심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피감사기업이 적정의견을 표명받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감사인과 계약할 것이라는 의심이 지속되었다. 감사의견구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사인을 선택하는 동기가 감사품질이 아니라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이 되므로, 감사품질의 개선이 어려워지고 피감사기업의 입맛에 맞는 감사의견만 제시되어 자본시장에 보고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감사의견구매의 존재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감사의견구매는 감사인을 교체하여 이루어지므로 감사의견구매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면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 간의 감사의견 표명의 보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는 순위형 로짓모형과 순위형 프로빗모형을 사용하여 감사보고서 상에 표명된 계속기업불확실성과 감사의견을 조합하여 3개 범주로 구분하였고, 이를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으로 구분하여 총 6개의 순위 집단을 선정하였다. 이 순위집단을 순위형 모형의 종속변수에 투입하여 순위집단 간의 임계점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각 임계점 간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감사인 교체기업과 미교체기업 간의 감사의견 표명 보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감사인 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받았으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인 2순위와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인 3순위 간의 2번째 임계점(cut 2)과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인 3순위와 감사인 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인 4순위 간의 3번째 임계점(cut 3)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사인 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인 4순위와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인 5순

위 간의 4번째 임계점(cut 4)과 감사인 미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인 5순위와 감사인 교체기업이 계속기업불확실성을 표명 받았으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인 6순위 간의 5번째 임계점(cut 5)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을 교체하더라도 감사의견표명기준이 덜 보수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감사의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의견구매가 시장 전반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감사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공헌점으로 볼 수 있다. 외부감사시장에서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감사의견구매의 실재 여부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감사의견구매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증거는 외부감사시장의 정책수립에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감사의견구매가 개별 기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본 연구는 시장 전체에 대한 연구이므로 개별적인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진 않는다. 둘째, 실제 감사의견표명기준점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감사의견표명기준점을 사용하여 측정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감사의견표명기준을 외부에서 더욱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으로 더 우수한 연구모형이 필요할 것이며, 개별 기업 수준에서 감사의견구매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R. Francis & J. Krishnan. (1999).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1), 135-166.
- [2] J. Krishnan. (1994). Auditor Switching and Conservatism. *The Accounting Review*, 69(1), 200-215.
- [3] C. W. Chow & S. J. Rice. (1982). Qualified Audit Opinions and Auditor Switching. *The Accounting Review*, 57(2), 326-335.
- [4] D. B. Smith. (1986). Auditor "Subject to" Opinions, Disclaimers, and Auditor chang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6(3), 95-108.

- [5] J. Krishnan & J. Krishnan. (1996). The Role fo Economic Trade-Offs in the Audit Opinion Decision: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11(4), 565-586.
- [6] Y. I. Shin & H. W. Cho.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Initial audit Fee Discount on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32(1), 239-271.
- [7] L. E. DeAngelo. (1981). Auditor Size and Auditor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183-199.
- [8] A. Ghosh & D. C. Moond. (2005). Auditor Tenure and Perceptions of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0(2), 586-612.
- [9] S. Y. Lee & H. J. Song. (2005).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Audit Fees after Deregulation: The Effects of Non-Audit Services and Corporate Governance. *Korean Accounting Review*, 30(1), 239-271.
- [10] J. H. Roh. (2009). The Effect of Manadatory Auditor Rotation on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34(4), 1-29.
- [11] J. H. Choi., S. H. Ahn. & M. H. Hwang. (2016).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Quality after the Auditor change and Audit Fee Low-balling: The Differences between Mandatory Auditor Change Firms and Voluntary Auditor Change Firms. *Korean Accounting Review*. 41(2). 131-165.
- [12] N. Dopuch., R. W. Holthausen. & R. W. Leftwich. (1987). Predicting Audit Qualifications with Financial and Market Variables. *The Accounting Review*, 62(3), 431-454.
- [13] H. Y. Ma., S. Y. Kwon.. & J. Y. (2012). Jeong, A Case Study on Audit Quality using Abnormal Audit Fees and Abnormal Audit Hours. *Korean Accounting Journal*, 21(1), 259-287. 2012.
- [14] D. I. Kim. (2016). Analysis on Chinese companies with Introduction of the IFRS and the Conservatism Featur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105-113.
- [15] J. S. Park & S. H. Kim. (2013). The Effect of Securities Class Action on Auditor Conservatism. *Korean Accounting Journal*, 29(4), 189-214.
- [16] C. H. Shin. & J. K. Kim. (2017). The Effect of Audit Fee Dumping on the Audit Qua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167-174.

신 찬 휴 (Shin, Chan Hyu)

[정회원]



- 2008년 8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학사)
- 2012년 2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경영학석사)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경영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안동대학교 경

영회계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재무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 E-Mail : chshin@anu.ac.kr